

## 농림어업인 삶의 질향상특별법개요 및 복지분야 기본계획(안)

이경숙

농촌진흥청 농촌자원개발연구소

### 1. 삶의질향상특별법 개요

#### 가. 제정 배경

- 대외적으로 DDA 협상 진행, FTA 확대 등으로 농산물시장 개방이 가속화되면서 국내적으로는 농어업인의 어려움이 증가 될 것으로 전망
- 전체경제와 농업부문간 성장격차 확대, 농가교역조건 악화 등으로 농가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.
  - ☞ 1인당 농가소득('02) : 25백만원(도시 근로자 평균소득의 82.4%)
  - 농어촌인구의 지속 감소 및 고령화로 농어촌 지역사회 유지 곤란
  - ☞ 농가인구('02) : 359만명('92 대비 41.5%)
- 농어촌지역의 복지·교육·정주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지역불균형, 국민통합 저해 등의 문제가 심화될 수 있음.
- 농어촌복지의 획기적인 개선대책이 없이는 농어업의 발전이나 농어촌사회의 안정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
- 따라서 향후 농어촌의 복지·교육·지역 개발 등에 집중 투자하여 농어촌의 지속적인 유지·발전을 위한 새로운 틀 마련 필요
- 지속가능한 국가발전, 도·농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농업·농촌의 유지·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긴요
- 농산어촌 복지·교육 및 지역개발 정책의 범정부적인 추진을 위한 시스템 구축
- 15개 중앙부처가 참여하는 위원회(위원장 : 총리)를 구성·운영하여 분산되어 있는 각 부처 기능의 조정·통합
- 5개년 기본계획, 부처별 시행계획 및 시·도, 시·군계획 등의 수립 및 실적평가를 통해 종합적인 추진체계 확립
- 농산어촌 복지서비스 및 인프라 확충으로 도·농간 균형 확보
- 농산어촌의 지역특성 및 인구구조 변화에 부응한 복지 서비스 확충
- DDA, FTA 확산 등 여건변화에 대응한 농촌형 사회안전망 강화
- 농산어촌에 거주하면서도 큰 불편함이 없도록 교육여건 개선
-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지원
- 우수교원의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
- 지자체와 주민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농업, 자연, 문화가 공존하는 쾌적한 삶의 공간을 위한 지역 개발 추진
- 생활환경개선, 경관보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발
- 농촌관광, 외부자본의 농어촌 투자 유치 등 도·농 교류 촉진

## 2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특별법개요 및 복지분야 기본계획(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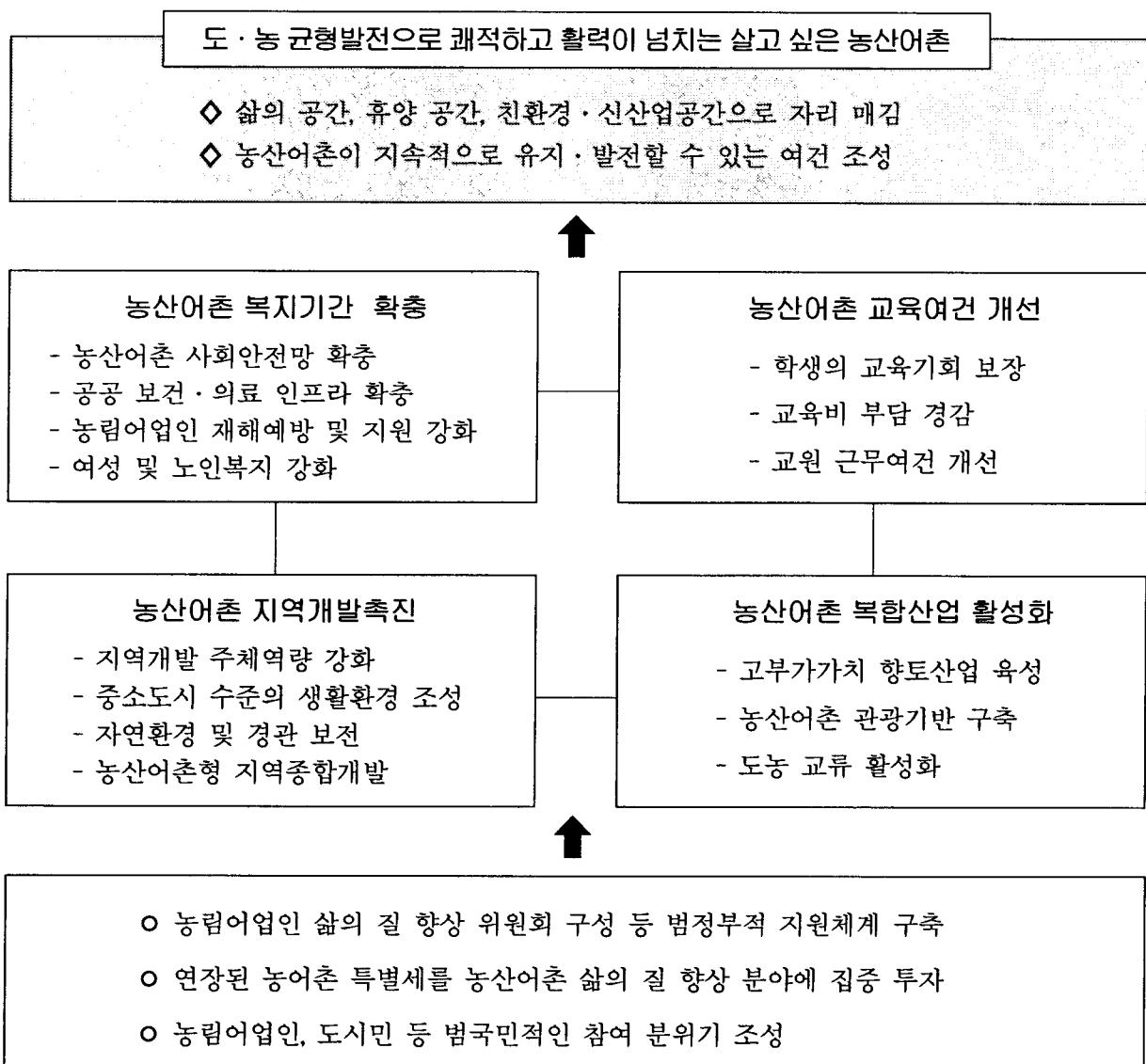
### 2 기본계획 수립추진 경과

-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 촉진에관한특별법 제정·시행( '04.3.5 공포, 6.6 시행)
  - \*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특별법 시행에 대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방안 연구용역( '03. 12 ~ '04. 6)
- 법 시행 직후 기본계획 수립 착수( '04. 6. 28)
  - 관계부처 실무자, 전문가 등으로 T/F를

### 구성

- 학계, 연구기관, 시·도, 농민단체 등으로 자문단 구성
- 농산어촌 복지·교육·지역개발 실태조사 실시(8.18~11.18)
- 기본계획심의·조정을 위해 농림어업인삶 의질향상위원회 구성(12.8)
- 위원회 : 국무총리(위원장), 농림부 등 15 개부처 장관, 민간위원 9명

### 3. 기본계획의 비전과 추진전략



## 4. 농산어촌 복지기반 확충

### 가. 현황 및 문제점

- 농산어촌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전국적인 기준에 의한 농산어촌 지원
  - 소득평가 및 재산소득 환산액 산정, 부양 의무자 기준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기준이 농산어촌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
    -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위한 재산평가액 등 산정시 농지가액과 농기계 등 동산의 재산가액을 합한 금액(최고 500만원)을 감액 ('04.6.5부터)
  - 농작업 재해로 인한 사망 보상 수준이 미흡
- 공공의료시설 등 기초보건·의료 인프라 부족, 재해예방 및 관리체계 미흡
  - 농산어촌 인구의 노령화, 만성질환자 증가 등으로 보건·의료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농산어촌지역의 보건·의료환경이 열악
    - 농산어촌인구는 전체인구의 20% 수준이나 의료인프라의 90% 이상이도시에 집중되어 있고, 의료기관이 원거리에 있어서 접근성이 떨어짐
  - 농작업여건 변화로 인한 작업부담과 유해 작업환경 증가로 농림어업인의 직업성 질환 및 안전사고 발생 증가
-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여성의 사회·경제적 역할 증가 등 농산어촌의 특수성을 반영한 복지지원 정책이 필요
  -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 농림어가 노인들의 주 소득원이 본인의 노동으로 나타나 국가차원의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

### 나. 주요 추진과제

#### 1-1. 농산어촌 사회안전망 확충

◆ 농림어업인의 노후생활 보장 등 기초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산어촌의 특수성을 고려한 사회안전망 구축

- (1) 농림어업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특별 지원 확대
  - 건강보험료 경감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보험료 부담 완화
    - 건강 보험료 경감율 : ('04) 30% → ('06) 50%
  - 농림어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을 개선
    - 건강 보험료 산정을 위한 소득액 평가시 휴·폐경 농지, 빙 축사 등에 대한 감액 기준을 현행 20%에서 단계적으로 확대
  - 체납 보험료 경감 등으로 저소득 농림어업인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
    - 무소득 농업인에게 적용하는 결손처분 재산금액 단계적 확대
- (2)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확대
  - 연금 보험료 지원 기준인 표준소득월액 등급을 현행 12등급에서 18등급으로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하여 연금보험료 지원을 강화
    - 1인당 년간 보험료 지원액 : ('04) 99천 원~152천 원 → ('09) 119~394천 원
- (3) 농림어업인 업무상 재해보상 지원 강화
  - 농업인 안전공제의 지원수준을 단계적으로 확대
    - 사망 공제금 : ('04) 10백만원 → ('05) 15 → ('09) 60백만원
  -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율 제고 : ('04) 65% → ('09) 80%
- (4) 농림어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선 검토

## 1-2 농산어촌 보건·의료기반 확충

- ◆ 보건의료 지원기능을 확충하고 농작업 재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산어촌의 취약한 보건·의료 인프라를 보완

### (1) 공공 보건 및 의료기반 확충

- 농산어촌의 취약한 응급의료 인프라를 보완
  - '09까지 응급의료가 취약한 28개군 지역의 응급시설·장비 보강 등
- 보건소, 보건지소의 노후 의료장비를 대폭 개선하고, 의료체계, 이용상황 및 노후정도 등을 감안하여 보건소 등 신·증축 추진
  - \* 농산어촌의 공공보건기관: 3,316개소(보건소 146, 보건지소 1,271, 보건진료소 1,899)
- 지방공사 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기능 강화
  -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를 보강하여 야간 진료, 응급의료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방거점병원으로 육성
- 공공보건의료 인력의 교육·훈련강화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

### (2) 농산어촌 마을 건강관리실 설치

- 운영비 자체조달 등 운영활성화가 가능한 마을 위주로 신규 설치 추진
  - \* 건강관리실 설치 : ('04까지) 884개소

### (3) 농작업 재해예방 및 관리 시스템 구축

- 농작업 재해 원인 구명 및 농작업 환경개선 방안 개발
  - 유해가스, 농약, 위험 농작업 등 유해 작업환경 안전 관리기준 설정
  - 농작업 안전 장비 개발 : ('04) 18종
- 농진청(농촌자원개발연구소)의 농작업재해 안전관리 기능 보강

- 농작업 안전관리 전문가 협의체 구성·운영('05~)
- 농업인 농작업재해 통계생산 및 농작업 재해 예방·감시·관리 실시
- 인트라넷을 통한 직업성 질환 감시체계 구축·운영 및 원격진료 상담

### (4) 안전영농구역(Safe Farm Zone)지정으로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

- '05년에 농업인, 보건, 의료 전문가 등으로 작업팀을 구성하여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
- 농작업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농업 인교육 지원

### <세이프 팜 존>

- ◆ 시설재배, 과수, 축산 등 농업주산단지를 대상으로 각종 농작업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범마을 지정
- 관련 공무원, 보건·의료 전문가 농작업 장비제작자, 농업인 등으로 지역세이프 팜 존 추진 협의회 구성
- 농작업 보조장비, 작업환경개선 시설 및 작업안전 교육지원 등
  - \* 미국, 캐나다 등도 Safety Zone을 지정하여 위험한 농작업으로부터 농업인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원

## 1-3 영유아 및 여성복지 지원 강화

- ◆ 농산어촌 여성의 모성보호 및 사회적·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재정적 지원을 추진

### (1) 농산어촌 보육시설 설치 확충 및 운영

- 전국 1,420개 읍·면 중 보육시설이 없는 491개 읍·면 지역에 국공립 보육시설 우선 설치
-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산어촌 장애아동 보육지원 강화를 위해 장애아동 통합보육시

## 설 설치 및 교사인건비 지원

### (2) 영유아 양육비 지원 확대

- '05년부터 영유아가 있는 2.0ha 미만 농림 어업인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, 단계적으로 모든 농림어업인에게 지원 추진

### (3) 여성농업인센터 설치 확대

- 여성농업인 고충상담, 영유아 보육 및 방과후 자녀 학습지도 등 종합적인 복지기능을 수행하는『여성농업인센터』를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
- 보육시설이 없는 지역에 우선 설치하여 시급한 복지수요 충족

### (4) 농가도우미 지원 확대

- 여성농업인 출산시 영농을 대행해 주는 농가도우미의 지원 기간을 확대하고 지원 단가를 점진적으로 인상
  - \* 지원기간 : 30일, 지원단가 : 30천원/일 ('05)
- 사고, 질병, 교육 등의 경우에도 영농지원이 가능하도록 출산에 한정된 현행 농가도우미제도를 보완·발전

### (5) 농산어촌 여성, 소외농가 이동 봉사단 운영

- 농협, 농민단체 등을 통하여 도시 등 전국의 농산어촌봉사 희망인력 및 단체들을 연계·조직화하여 여성, 소외농가를 대상으로 영농 및 가사 지원

### (6) 여성농업인의 소규모 특화사업 활성화 등 창업지원 강화

- 상품성이 있고 판로확보가 가능한 농특산 품 및 향토상품 등을 가공·판매하고자 하는 여성농업인에 대해 다양한 지원 실시
  - 1사1촌운동, 직거래사업 등을 통해 안정적인 판로확보가 가능한 수공예품, 전통·건강식품 등을 대상으로 생산·가공

## 시설 등을 지원

- 기존에 가공·판매되고 있는 상품성과 시장성을 갖춘 품목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품질향상 지원 추진
  - 품목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호 교류를 통해 품질향상 추진
  - 생산제품 박람회등을 통해 소비자 취향을 제품에 반영

### 1-4. 농산어촌노인의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 생활 지원 강화

◆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농산어촌 노인들의 건강한 삶과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반 확충

#### (1) 거동불편 재가노인에 대한 복지 지원 강화

- 가정봉사원 파견시설과 주간보호시설로 구성된 재가노인복지센터를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노인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
  - 농산어촌 재가노인복지센터 : ('04) 18 개소

#### (2)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한 지역공동체 중심의 노인보호체계 구축

- 건강한 노인과 여성 등을 노인봉사원으로 양성하여 지역내 거동불편노인을 보호하는 지역민 중심의 자율적인 노인보호체계 구축
- 노인봉사원은 거동불편, 재가노인의 안부 등을 매일 확인하는 일반봉사원과 목욕, 이·미용을 지원하는 전문봉사원으로 구분·양성
- 노인봉사원의 활동에 필요한 재가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
- 우수사례 홍보 등 지속적인 농산어촌 복지 캠페인 전개

#### (3) 건강하고 보람된 노후생활을 위해 노인교

## 6 농립어업인 삶의 질 향상특별법개요 및 복지분야 기본계획(안)

### 육 및 여가활동 지원

- 농산어촌노인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개발 운영
  - 포크 댄스, 부업기술, 건강관리, 가족관계 유지 기법 등
- 우수강사 및 자원봉사자 강화 등을 통하여 내실 있는 노인교육을 추진
- 농산어촌 노인들의 여가 및 취미 활동 동아리 모임 활성화
- 농산어촌 노인 솜씨 박람회 등 이벤트 개최를 통해 전통기술 보유 노인들의 소득화 기반 및 전통 솜씨의 전승기반 마련

### (4) 생산적 노인복지기반 구축

- 농산어촌 고령노인, 도시 은퇴자 등을 대상으로 주거·의료·여가시설 등으로 구성된 복합노인복지시설을 '05년 4개소 시범 설치후 단계적으로 확대
- 노인에게 적합한 다양한 고령친화농업모형 개발 및 시범단지를 조성하여 건강 유지 및 보람 창출 기회 제공
  - 보람추구형, 여가활동형, 관광농업형 등 6종 내외의 모형개발 및 고령친화농업에 적합한 작목 개발 등
- 농산어촌 고령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자영농지를 매도 또는 임차하는 고령농업인들에게 경영이양직불 보조금을 지원

## 4. 농작업재해 예방·관리를 위한 세부추진 계획

### 가. 국내 농업안전보건의 현황 및 문제점

- 농업여건 변화로 농업인의 직업성질환 및 안전사고 발생 증가
  - 농작업환경에서의 건강유해요인 증가 : 유기분진, 포자, 동물털, 비닐하우스 등
  - 근골격계질환율 : 농업인이 비농업인의 2.4배 (농진청, '04)
  - 농기계사고 : 경북지역 31명 사망, 742명

### 중경상 (경북소방통계, '03)

- 산업재해율(농업) : 전체산업재해율의 1.6배(노동부, '01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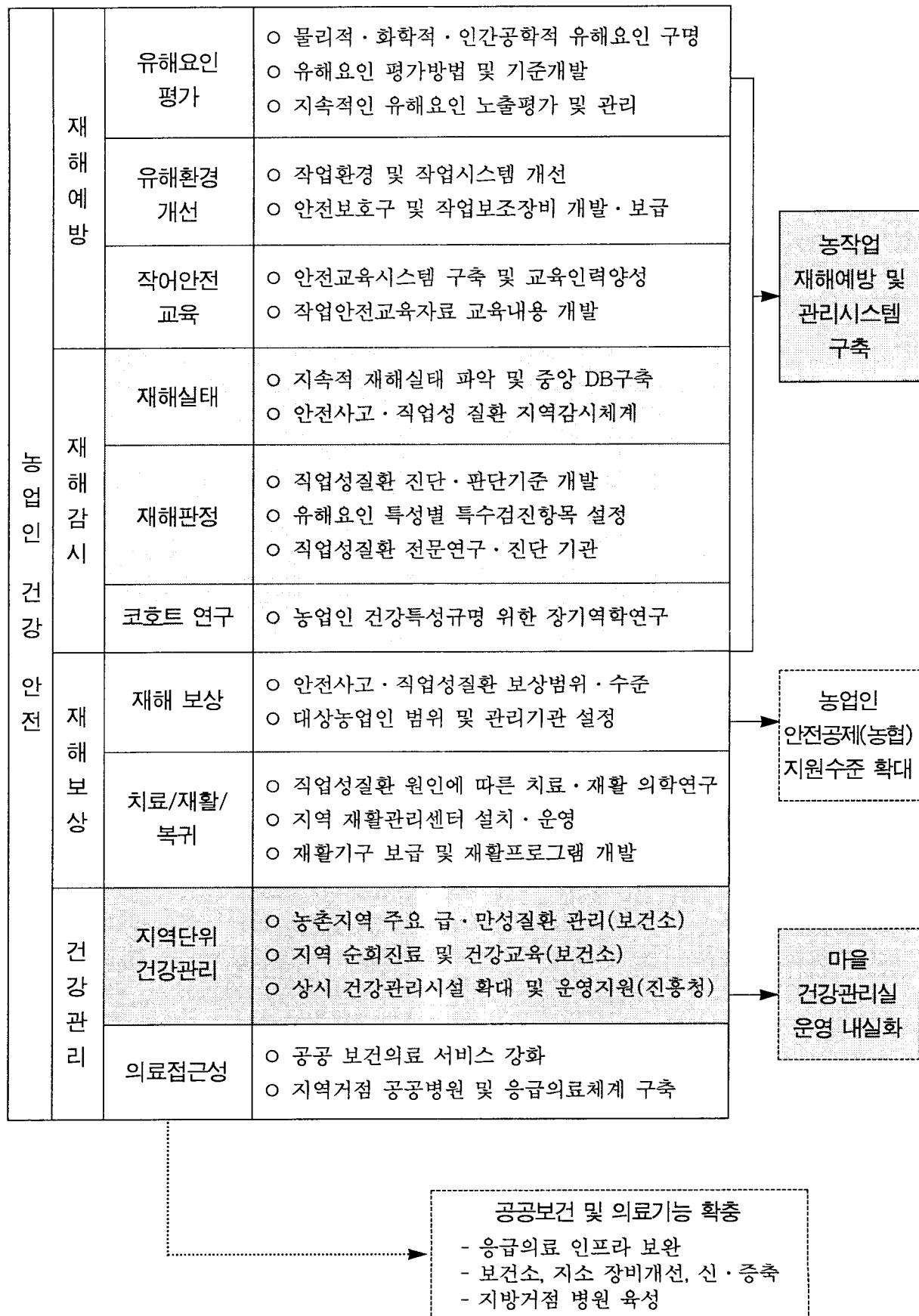
### □ 선진국의 경우 농업을 고위험산업군으로 규정, 집중관리하고 있음

- 산업별 산재위험 분류 순위 : 광산업> 농업> 건설업 (미국 BLS, '04)
- 미국 : NIOSH와 농업안전보건센터(미 10개주)를 중심으로 농작업과 관련된 사고, 질병, 유해물질 등의 연구, 정책지원, 예방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
- 캐나다 : 농업·농식품성을 중심으로 농업안전협회, 농업안전프로그램, 농업상해조사프로그램 등에 대규모 투자
- 일본 : 농림수산성에서 농작업안전지침 제작, 지자체단위 예방사업 수행

### □ 농작업재해 감시, 예방, 보상 등 국가차원의 체계적 관리 기능 부재

- 농작업 재해의 전국적 기초통계자료 부재
- 재해 발생모니터링 시스템이 없어 재해규모 파악이 어려움
- 농업인의 직업성질환에 대한 규정 및 원인구명 미흡
- 예방 및 보상에서의 효과적인 대책마련이 어려움
- 농작업 관련 상해 및 질환에 대한 산업재해로서의 인식 부족

## 나. 농작업재해 예방·관리 전략과제와 삶의질특별법 기본사업계획 연계도



## 다. 핵심 분야별 세부 계획

### 1. 농작업재해 원인구명 및 농작업환경개선 방안 개발

- 농작업 재해 원인구명, 재해 진단기준 개발
- 유해 작업환경 평가 및 농작업 안전기준 확립 ('05~계속)
  - 유해가스, 농약, 근골격계 위험요인 등 유해작업환경 안전기준 설정
- 유해요인 경감을 위한 작업시스템 및 보조도구 개발 지원
  - 농작업 보호구 및 보조장비 개발 : (현재) 18종 → ('09까지) 60종
- 농작업 재해관리 정보 제공을 위한 교육 매체 및 프로그램 개발

#### 1) 목 표

작업환경에 따른 농업인의 직업성질환 및 사고발생의 원인을 구명하고 경감방안을 도출하여 농업현장에 적용함으로서 쾌적한 작업여건 조성 및 농업인의 건강보호 도모

#### 2) 세부내용

- 농작업 재해 원인구명, 재해 진단기준 개발
  - 농작업 재해 원인구명 /판정기준 개발을 위한 역학조사 수행
  - 코호트 역학조사 ('06~계속) : 코호트 군 지정, 10년간 지속적 건강영향 평가
  - 농작업으로 인한 업무상 질환 및 사고의 분류, 규정 및 진단기준 개발
- 유해 작업환경 평가 및 농작업 안전기준 확립
  - 분진, 유해가스, 농약, 근골격계 위험요인 등 유해작업환경의 노출수준 평가
  - 유해작업 환경에 대한 안전기준 확립
- 유해요인 경감을 위한 작업시스템 및 보조도구 개발
  - 농작업 보호구 및 보조장비 개발 : (현재) 18종 → ('09까지) 60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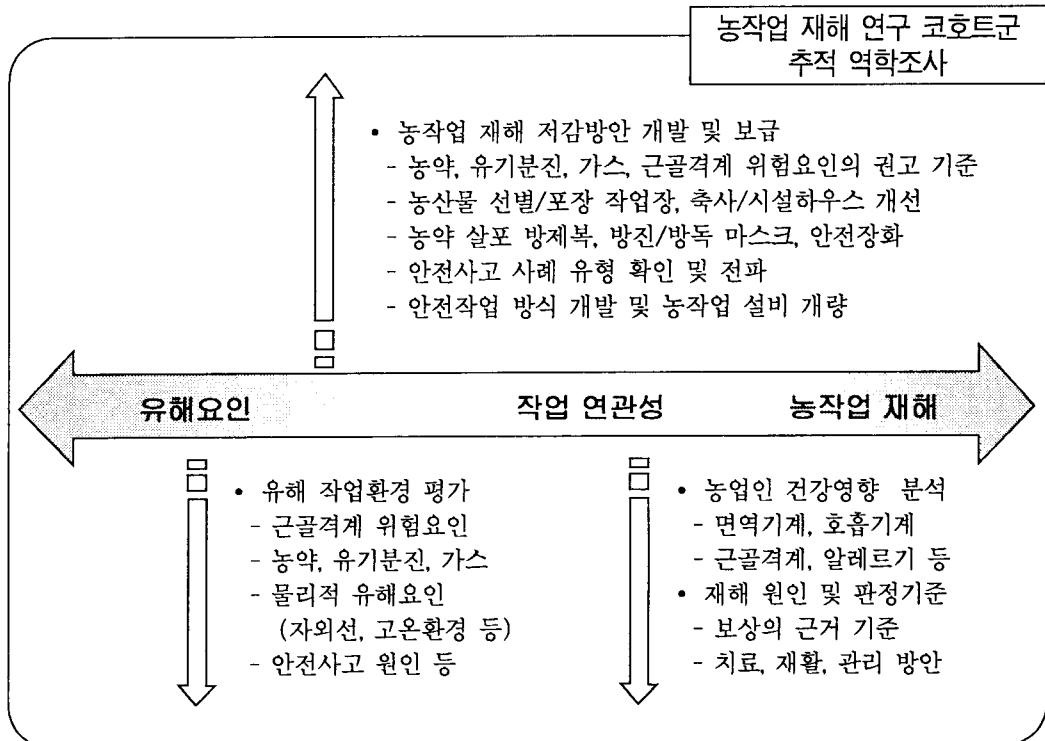
: 농약방제복, 농작업 보호장갑/장화, 보조의자, 작업대, 수확운반차 등

- 유해 작업장의 안전모델 개발 및 지원
  - : 하우스 중간 휴게실, 축사/버섯사 시설 개선, 농산물 선별 작업장 등
- 우수 농작업 환경개선 사례 및 보조장비 현장 사용결과 평가/보완/보급
- 농작업 재해관리 정보 제공을 위한 교육 매체 및 프로그램 개발
  - 농업인/농업안전보건 담당자 대상 농작업 안전정보 개발 및 제공
  - 작업안전 매뉴얼, 교육·홍보 매체 개발

#### 3) 추진방안

- 농작업 재해 원인구명, 재해 진단기준 개발 : 코호트 추적조사 항목 (검진항목, 질환, 유해요인) 선정 → 표준 인구집단 선정 (인구특성 조사) → 코호트 추적 DB 구축 → 연도별 특수 건강검진 → 농작업 유해요인 폭로 추적 조사
- 유해 작업환경 평가 및 농작업 안전기준 확립 : 유해요인 노출수준 측정 → 노출 정도 평가 → 저감방안 개발 → 현장 보급
- 유해요인 경감을 위한 작업시스템 및 보조도구 개발 : 작목별 농작업 환경 평가 (인간공학적 유해요인, 유해가스, 분진, 농약) → 작업 보조도구의 개발 → 현지 시범 적용 및 평가 → 현장 보급
- 농작업 재해관리 정보 제공을 위한 교육 매체 및 프로그램 개발 : 교육수요 조사, 교육대상, 중요 교육내용 선정 → 교육매체, 프로그램개발 → 보급

〈 세부사업내용 개략도 〉



## 2 농작업재해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· 운영

## 하도록 함

- 「농작업재해 안전관리센터」를 통한 재해 예방/관리 정책 지원
  - 농작업재해 안전관리센터 설치를 위한 TFT 구성 운영('05 상반기)
  - 농작업 안전보건 전문가 협의체 구성 · 운영('05~계속)
- 인트라넷을 통한 직업성 질환 감시체계 구축 · 운영
  - '06년 18개소(도별 2) → '09년 165개소 (1시군 1개소 목표)

### 1) 농작업재해 안전관리 센터란 ?

농작업 재해의 예방 · 관리를 위한 총괄적인 중앙관리기구로서, 관련 전문가 협의체 구성 · 운영을 통한 농작업재해 국가관리정책 지원, 농작업 재해발생에 대한 총괄적 모니터링, 관련 연구사업의 지원 등을 통하여 농작업 재해 경감을 위한 국가의 체계적 관리지원이 가능

### 2) 세부내용

- 「농작업재해 안전관리센터」를 통한 재해 예방/관리 정책 지원
  - 「농작업재해 안전관리 센터」설치 ·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TFT팀 구성 · 운영
  - 농작업재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상설 협의체 구성 · 운영 및 정책지원 : 중앙 · 지역 관련기관, 학계전문가, 민간단체, 농업인단체 등
- 인트라넷을 통한 직업성질환 감시 · 관리 체계 구축 · 운영
  - 중앙 - 지역병원 · 소방서 · 관공서 연계 시스템 구축 및 재해 발생 모니터링
  - 농업인 업무상 재해 현황 국가통계생산 및 향후 정책방향 제시

### 3) 추진방안

- 인트라넷을 통한 직업성질환 감시 · 관리

### 체계 구축·운영

-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TFT팀 구성·운영 → 모니터링 내용·시스템 구상 → 일부지역대상 감시체계 시범운영 → 전국단위 감시체계로 확대운영

### 3. 세이프팜존(Safe Farm Zone) 조성 지원 사업

- 세이프팜존 조성 전후 안전진단 및 작업관리시스템 개발 지원
  - 세이프팜존 클러스터 구축·운영 및 현지 컨설팅 지원
- 환경·작업안전·건강관리 등의 지원을 통한 세이프팜존 육성
  - '06년 45개소(도별 5) → '09년 330개소 (1시군 2개소 목표)
- 농작업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농업인교육 지원
  - 전문인력 양성(시군당 1명) 및 농업인교육 : ('06) 1,000명 → ('09) 4,000명

#### 1) 세이프팜존 사업이란?

세이프팜존은 농작업 재해를 예방·관리하기 위한 우선사업지역으로, 세이프팜존 지원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농작업 안전성 확보를 위한 컨설팅을 수행하고, 이를 기반으로 농작업 보조장비 및 안전 농작업환경 시설 등 국가지원사업의 집중투입과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한 노동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임

#### 2) 세부내용

- Safe Farm 육성·관리를 위한 중앙·지역거점 간 연계시스템 운영
  - 중앙단위 : Safe Farm 도입·추진방안 수립 및 사업평가단 운영
  - 지역거점단위 : 지역거점별 클러스터 운영으로 소단위지역 컨설팅 지원
- 작업안전·건강관리·생활복지 등의 지원을 통한 Safe Farm 육성
  - 농업인 작업안전수준, 건강상태, 빈발재

### 해유형, 위험요소 등 진단

- 농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지원 및 농작업 안전관리 교육지원
- 빈발질환·사고 집중관리시스템 및 특화된 건강관리 시설, 교육지원
- 농작업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지속적인 현장 안전관리지도 유도

※ 권역(cluster) : Safe Farm Zone 시범촌을 도별 2개 권역(경기도 1개 권역) 단위로 통합하여 농업인 건강 실태 및 관련 사업에 대하여 진단, 개발, 평가를 수행

#### 3) 추진방안

- 사전준비단계 ('05년도)
  - : Safe Farm 사업수행을 위한 TFT팀 설치·운영 → 사업내용 및 수행방안 수립 → 시범지역 운영
- 실제수행단계('05년도~) : 연차별로 대상 지역 확대)
  - : 초기단계(지역 특성에 맞는 전문가 클러스터 구성) → 도입단계(건강검진, 농작업 환경 평가) → 실시단계(지역특성별 예방지원 시스템 적용) → 평가단계(유해요인, 건강, 농업인 만족도 평가)

